

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07-99호

백운주택재개발 (1구역) 건축허가의 제한 지형도면 고시

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의 제한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07. 11. 21.

인천광역시 남구청장

1. 제한구역의 명칭 및 면적

지구명	위치	면적(m ²)	비고
백운주택 재개발(1구역)	남구 주안6동 159-32번지 일원	10,901.8m ²	

2. 제한기간

○ 공고일로부터 2년간(2007.11.21 ~ 2009. 11.20)

* 필요시 1년 연장(단,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)

3. 제한대상

-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신축, 증축, 개축, 대수선 허가행위
-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건축물중 신축, 증축, 개축, 대수선 신고행위
-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중 일반건축물(단독주택 포함)을 집합건축물(공동주택 포함)로 용도변경
-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

4. 건축허가 제한 제외대상

○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허가 및 행위

5.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지형도면은 인천시청 건축계획과(☎440-3823) 및 남구청 건축과(☎880-4452), 주안6동 주민센터(☎880-4695)에 비치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